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  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병원장  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  
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6(2024.5.8.)

2.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, 본회 보험국(E-mail : yjkim@kha.or.kr / Fax : 02-705-9259)으로 2024.6.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개정안 주요내용>

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(안 제19조, 제22조의2)

-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\* 정비(안 제22조의2)

\*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→ 민법상 법정이율

나.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평가 관리 시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(안 별표2)

다.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(안 별표3)

- 보험료 1~2구간(소득 하위 30%)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

- 보험료 3~7구간 및 120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인상

붙임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.

※ 붙임자료는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에서 다운로드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차장 김영진 팀장 노환우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
시행:보험 제 2024-178 (2024.05.09)
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59) E-mail : yjkim@kha.or.kr